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0. . . (제 회)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최근 대여사업용 자동차와 관련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교통수단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여 교통안전 위험요인 조사 및 관계법령의 위반여부 등을 점검,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가. 대여사업용 자동차에 대해 교통수단안전점검(안 제20조제1항·제2항)

1) 대여사업용 자동차와 관련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버스·택시)과 같이 대여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도 교통수단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교통안전 위험요인 조사 및 관계법령의 위반 여부 등을 점검, 시정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2020. 12.~)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규제 신설)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및 제28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제20조(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u>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u> 가 보유한 자동차 및 그 운영에 관련된 사항 2. ~ 7. (생략) ② 법 제33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보유한 교통수단을 말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같은 법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등 자동차 보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는 <u>제외한다</u>) 2. (생략) ③ ~ ⑤ (생략)	제20조(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 등) ① ----- ----- ----- 1. ----- --- <u>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u> ----- ----- 2. ~ 7. (현행과 같음) ② ----- ----- ----- ----- 1. ----- ----- ----- ----- ----- ----- <u>제외한다</u>) <u>및 제28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자</u> 2.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3819